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ㅇ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02년12월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 제안이유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인의 주차장설치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함. (안 제24조)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 보조금 지급한도를 정함 (안 제25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ㅇ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한해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인가?	ㅇ예
ㅇ나대지의 주차빌딩 설치시에도 지원 가능한가?	ㅇ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가능 함.
ㅇ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경우 몇 년이상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ㅇ시행규칙에 7년이상으로 규정할 것임.
ㅇ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주차장을 설치 운영중 매각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ㅇ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절차를 받겠음.
ㅇ실효성은 있다고 보는가?	ㅇ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차 회전율이 높은 시내지역은 가능할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출년월일 : 2002. 11. 2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인의 주차장설치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함(안 제24조)

○ 자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금 지급한도를 정함(안 제25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보조의대상)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제24조(보조의 대상) 제23조에 의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보조의 대상)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신설〉	제25조(보조금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1